

2-1. 출산양육 주택취득 감면

〈지특법36조의5 및 시행령 제17조의4〉 23.12.29. 신설

*유상취득 뿐만 아니라 **무상취득, 원시취득**도 포함

- ▶ 특례 신설 이후 추가로 출생(~ '25. 12. 31. 까지)하는 자녀의 부모(미혼모, 부 포함)가 취득하는 1주택
- ▶ 출생한 자녀와 실거주 등 요건 충족 시 500만원

한도 감면(100%) :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

출산양육 주택취득 감면 요건

1. 취득가액 : 취득 당시의 가액(지방세법제10조)이 **12억원** 이하
2. 실거주 : 출산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
3. 1가구1주택 : 출산지원 목적으로 다주택자는 감면 배제 (단,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 경우는 인정)
4. 취득기한 : 주택 취득 소요기한 고려,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취득**[24.1.1.0]후 취득하는 경우 한정** 경우
**24.1.10]후 출산하고 주택을 취득하거나(부칙 제5조제1항),
24.1.10]후 취득하고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제5조제2항)**